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김경영, 김경우,
김소양, 김제리, 김화숙,
노식래, 박기재, 이병도,
이정인, 전병주, 조상호,
최 선, 홍성룡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,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저임금,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.
- 또한, 장기요양요원들이 종사하는 돌봄 노동은 일상적으로 이용자에게 밀착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, 또한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1대 1로 고립되어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특성상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.
-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조항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 (안 제6조)
- 나.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·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함. (안 제10조제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처우개선 사업 등)”을“(처우개선 등 사업)”으로 하
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
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
4.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

제10조제5호 중 “권리”를 “노동권, 성희롱·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
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장기요양요원의 <u>권리</u>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6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</u></p> <p>4. <u>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</u></p> <p>5. 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센터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노동권, 성희롱·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</u></p> <p>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	2021012000000008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
접수일 : 2021.01.20	
회신일 : 2021.01.29	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(센터의 기능) 제5호에 ‘노동권 및 성희롱·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’로 명시함에 따라 성희롱·성폭행 등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을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 - 안 제6조(처우개선 등 사업)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은 기 추진 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정책조사팀장	여차민
주 무 관	채소영
	☎ 02-2180-7942
	e-mail : liz1998@seoul.go.kr